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반환일시금 분할수급제도 도입 〉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88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반환일시금 분할수급제도 도입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7

I. 개요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88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4.
- (3) 회 부 일 : 2025. 11.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반환일시금 분할수급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가지게 된 때 반환일시금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반환일시금) ①·② (생략)	제77조(반환일시금)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가산액을 포함한다)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지급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으로 본다.
<u><신설></u>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그 기간 중 사망한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u>경우 그 유족은 청구에 의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u> ⑤ 제1항 및 제4항-----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일시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권을 가지게 된 때 반환일시금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누어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5년 상반기 중 지급된 반환일시금 최고액이 약 1억 4,7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모에 따라서는 이를 분할수급할 경우 수급권자가 적정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거나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여지는데,¹⁾

1)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에 총 102,427명이 반환일시금을 수급하였고, 같은 기간 반환일시금 지급금액은 총 6,897억 4,800만원으로서 수급자 1인당 평균 약 673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중 최고액은 약 1억 4,700만원임.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上
지급인원	189,205	199,170	175,279	196,290	102,427
지급금액	940,751	1,074,442	1,146,957	1,264,760	689,748
평균 지급금액	4.97	5.39	6.54	6.44	6.73

자료: 국민연금공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반환일시금 규모와 관계없이 분할수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025년 상반기 중 지급된 반환일시금 평균액은 약 673만원으로, 분할지급으로 인한 국민연금공단의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도중에 잔여분에 대한 ‘일시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서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 지급방법을 ‘일시수급’ 또는 ‘분할수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달리 그 총액이 확정된 급여인 점을 감안하여 ‘분할수급’을 허용할 경우 ‘분할수급 중단 후 잔여분의 일시수급’까지를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77조제3항에 따라 분할수급을 청구한 경우에 가산되는 이자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77조제2항에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안 제77조제3항 전단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의 분할수급을 허용하면서도, 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온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와 ② 반환일시금 분할수급에 따라 그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이자를 어떻게 산정하여 가산·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반환일시금의 산정)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연금보험료(법 제92조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조 제2항을 참고하여 각 이자의 계산 방법이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국민연금은 노령·사망·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국가가 보전하기 위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 및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반환일시금은 향후 재가입을 통한 가입기간 확보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가와 가입자 간 계약을 ‘청산’하는 성격의 급여로,

반환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노령연금과 유사한 급여가 되어 국민연금의 취지 및 기본 운영원리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고,

가입자 입장에서 장기적 연금 수급을 위하여 임의계속가입 또는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반환일시금 분할 지급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관리 비용 발생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 신중검토

-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급여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임의계속가입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환일시금 지급방식의 다양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6